

[사 건 명] 행심 2017 - 36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학교내 봉사 4시간 등』 처분 취소 청구

□ 청구인 : ○○○○

□ 피청구인 : ◇◇◇◇초등학교장

[주 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7. 8.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학교폭력가해에 따른 『학교내 봉사 4시간 등』 처분을 취소한다.

I. 사건개요

가. 청구인 ♡♡♡은 ☆☆☆☆☆학교 학생으로 동급생 □□□에 대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2017. 8. 2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결과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보호자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의거 학교에서 봉사 4시간과 학생특별교육 4시간과 보호자 동반 특별교육 4시간의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17. 8. 29.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는 바,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어 2017. 9. 6.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II.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주장한다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가해학생들을 근거 없이 분류하였고, 또한 객관적 사실확인을 게을리하거나 해태하는 등 적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음에는 아이들의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말하였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40분전 아이들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징계기준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

나. 청구인은 ☆☆학교 ◇학년으로서 폭력에 대한 사리분별력 및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이에 ‘고의’를 가지고 □□□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서로 영덩이를 서너번 친 행위만 있는 만큼, 이러한 정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교육적인 입장과 학생선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고, 또한 이 사건은 □□□도 청구인을 폭행하여 쌍방폭행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처분을 목적으로 부당한 처분을 하였다.

Ⅲ. 피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사건은 1대 다수의 행동으로서 관련학생들간의 단순한 싸움이 아닌 ‘힘의 불균형’이 존재하는 학교폭력에 해당된다.

나. 징계기준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간사

의 조치별 적용기준 적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그에 따라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화해정도로 나눠서 개인별로 판단하였다.

다.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의 절차에 따라 개인별로 시간을 달리하여 진술 및 조사 기회를 부여하여 청취하였고, 사안보고서, 진술서 등 일체를 확인하여 판단하였다.

IV.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1. 처분 근거법령

-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7조,
- 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 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제16조

2. 인정되는 기초사실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 증거자료, 구술 심리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 가. 청구인은 2017. 3. 이후에 쉬는 시간에 교실에서 ▷▷▷, ●●●와 함께 □□□을 여러 차례 폭행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7. 7. 19. 경 ●●●와 □□□의 싸움 도중에 □□□의 엉덩이를 폭행하였다.
- 다. 청구인의 담임선생님이 2017. 7. 20. 및 2017. 7. 25. 청구인을 포함하여 이 사건 관련자, 목격자들에 대해 조사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가해자들 대표로 합의를 진행중이던 ●●●의 아버지에게 학폭위가 개최되기 6일 전인 2017. 8. 17. 피해학생과 합의가 되어도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 학폭위가 개최된다는 점을 문자로 통보하고, 2017. 8. 21.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폭위 참석이 중요하다는 점을 문자를 통보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성

피청구인은 이 사건 관련 조사과정에서 □□□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받아들여서 가해학생들을 근거 없이 분류하였고, 또한 객관적 사실확인을 게을리하거나 해태하는 등 적법한 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처음에는 아이들의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없다고 말하였는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개최 40분전 아이들 불참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징계기준에 대한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학년 담임선생님이 2017. 7. 20. 경과 2017. 7. 25. 경 청구인을 비롯하여 이 사건에 연류된 학생들과 목격자들에 대한 조사를 한 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에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 2017. 8. 23. 전인 2017. 8. 17. 경 피해학생과의 합의가 있어도 피해사실이 있을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된다는 문자를 통보한 점, 2017. 8. 21. 경 청구인의 부(父)에게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학생들의 확인이 중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를 통보한 점,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학생 중 ▷▷는 2017. 8. 23. 경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한 점,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청구인의 보호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출석하여 진술한 점, 위원들이 근거없이 가해학생들을 분류하거나 위원들이 징계기준에 대하여 정확한 심사가 이루어지 않았다고 불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청구인의 절차 진행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피청구인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거나 징계를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지 여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협박, 약취,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따돌림”이란 학교내외에서 2명 이상의 학생들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공격을 가하여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고, 동법 제3조에 따르면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청구인은 ☆☆학교 ◇학년으로서 폭력에 대한 사리분별력 및 인지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나이에 ‘고의’를 가지고 □□□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서로 영덩이를 서너번 친 행위만 있는 만큼, 이러한 정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는 개학후 청구인뿐만 아니라 ●●●, ▷▷▷로부터 폭행을 계속 당하였다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위 □□□의 진술서의 작성경위를 보면, □□□가 피청구인의 ※※※ 교사 입회하에 □□□의 모친과 함께 구술대화를 하여 □□□의 모가 작성하여서 □□□가 확인한 내용으로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참석하여 청구인으로부터의 계속된 폭행을 당한 것이 사실이라고 진술한

점, 가해학생 중 한명인 ▷▷▷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출석하여 2017. 7. 19. 경 청구인뿐만 아니라 ●●●, ▷▷▷ 등이 □□□를 폭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담임 선생님의 청구인을 포함한 학생들에 대한 상담일지 상에 나타난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 ●●●와 함께 지속적으로 □□□를 폭행하여 왔고, 2017. 7. 19. 경 ▷▷▷, ●●●, &&&, ◎◎◎과 함께 □□□를 폭행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만큼,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단순하게 청구인의 행위가 장난으로 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기에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처분의 위법, 부당여부(재량권 일탈, 남용여부)

피청구인의 청구인의 처분에 대하여 양정을 살펴보면, 청구인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위원들의 처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할만한 재량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여지지 않는만큼,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라. 소 결론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절차상 하자가 없고, 이 사건의 청구인의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7조에 따른 것으로 적법, 타당하다.

V. 결 론

청구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